

#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118호)

- '99. 12. 20.
- 총무재무위원회  
위원장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'99. 11. 19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'99. 11. 25
- 다. 상정일자 : '99. 12. 20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94회 정기회중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(1회1일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차천복)

### 가. 제안이유

- '98. 10. 2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되어 제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계장이 담당주사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(안 제6조)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재근)

가. 검토내용 : 생략(검토보고서 참조)

### 나. 검토결과

- 본 조례는 측량법 제58조,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. 5. 1 조례 제15호로 제정되었고, 이후 2차에 걸쳐 개정된바 있으나 1998.10. 2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□ 개정요지 및 검토의견

- 안 제6조중 “동정계장”을 “행정업무담당주사”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> 지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은?

답> 지명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, 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·건설교통국장, 외부인사 4명은 박경용(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위원)·조광준(서울교대교수)·이흥환(땅이름학회 회장)·조경구(서초도박이)이며, 지명위원회 운영실적은 '98년도 공원명칭변경 13건을 심의하였고, '99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음.

질> 조례 제4조 지명위원회 임기에서 다른 위원회는 2년인데 3년으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인지?

답> 지명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'99년도의 경우 개최실적이 없는데 1년 또는 2년만에 위원회를 개최할때에는 지명위원회의 위원들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.

질> 조례 제5조제2항에 위원회 회의시 “가부동수 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”는 것은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의견은?

답> 조례 제5조제2항의 위원장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됨.

질> 지명위원회 개최시 가부동수가 된적이 있었는지?

답>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가부동수가된 사례는 없었음.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 : 없음.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10. 체계자구정리내용 : 없음.